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2170호, 2022. 2.3.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하고, 이용권의 지급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 00. ~ 2022. 1. 0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조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5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여권
3. 운전면허증
4.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등록증
6. 청소년증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말한다. 이 경우 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 이용권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이용권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호자의 기본증명서(특정)

⑤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권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권의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의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64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신부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_____ (서명 또는 인)

유 의사 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보호자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혼인중 부모) 위임장 불요
---------------	--